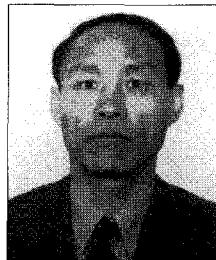


중국의 환경 관리 감독(2)



송길종 환경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1. 중국의 환경은 지금

2. 중국의 환경오염상황

- 가. 대기오염상황
- 나. 수질환경 오염상황
- 다. 고체폐기물 오염상황
- 라. 소음 오염상황
- 마. 도시환경

3. 환경감독관리 체제

4. 중국의 환경감독관리제도

- 가. 환경표준과 환경관측제도
- 나. 오염방지 감독관리 제도

3. 환경감독관리 체제

중국의 환경감독관리 부문은 크게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유관주관부문으로 나뉜다.

(1)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환경 보호업무의 통일 감독관리기관으로써 國務院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전국환경보호업무 실시를 통일적으로 감독관리 하는 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해당 관할 구역의 환경보호업무의 실시를 통일 감독관리 한다.

(2) 유관 주관부문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① 국가 해양행정주관부문은 해양 환경의 조사, 관측, 감시의 실시를 책임지며 해양석유 탐사 개발과 해양 폐기물 투기로 인한 오염손해의 방지를 위한 환경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의 항무감독은 해상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의 감독과 조사 및 항구수역의 감시를 책임

지며 아울러 선박오염손해의 방지를 위한 환경보호업무를 주관한다.

③ 국가 어정어항 감독관리기구는 어항의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감독과 어업항구수역의 감시를 담당 한다.

④ 군대 환경보호부문은 군용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감독과 군항구수역의 감시를 담당한다.

⑤ 각급 교통관리부문의 항정기관은 내륙수역의 선박오염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⑥ 각급 공안, 교통, 철도, 어업, 민항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기동차(機動車), 선박(船舶), 항공기의 대기오염과 소음오염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보호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① 국무원 임업행정주관부문은 전국의 삼림과 육생야생동물의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문은 해

당관할구역의 삼림과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② 국무원 수질행정주관부문은 전국의 수자원보호와 수토보호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현급 이상 자방인민정부의 수질행정관리부문은 해당 관할구역의 수자원보호와 수토보호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③ 국무원 토지관리부문은 전국의 토지자원의 보호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은 해당관할구역의 토지자원보호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④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문은 전국의 어업자원보호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어업행정주관부문은 해당 관할구역의 어업자원보호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⑤ 국무원 농목축업주관부문은 전국의 초원자원보호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목축업주관부문은 해당 관할구역의 초원자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⑥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문은 전국의 광산자원의 탐사, 채광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지질광산주관부문은 본 관할구역내의 광산자원의 탐사와 채광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유관 주관부문은 국무원 지질광산부문과 협조하여 광산자원의 탐사, 채광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

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 유관부문은 동급 지질광산주관부문과 협조하여 광산자원의 탐사, 채광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4. 중국의 환경감독관리제도

가. 환경표준과 환경관측제도

(1)환경표준

환경표준은 환경법의 주요한 내용이다. 환경표준은 환경관리의 기술적인 기초이며 중요 근거로서 그것은 국가와 지방의 환경목표와 방향을 규정하며 환경질량의 척도와 근거가 된다. 환경표준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간에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며 협조 작용을 구비하며 경제건설 중의 경제효익, 사회효익과 환경효익의 통일을 촉진한다. 환경법률 중 규정된 환경표준은 두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바, 하나는 환경질량표준이며 다른 하나는 오염물질 배출표준이다.

(2)환경질량표준

환경질량표준은 자원의 합리적이용과 생태평형의 유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오염물질이 일정한 환경중에서 허용된 최고함량을 확정하는 것이다. 환경질량표준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통제범위와 관리급별의 차이에

근거하여 국가 환경질량표준과 지방환경질량표준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환경질량표준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의해서 제정되며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지방환경질량표준은 국가환경질량표준 중 아직 규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제정된 지방보충성표준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가 제정한 것이다.

(3)오염물질 배출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환경질량표준을 실현하고 기술경제조건과 환경의 특징을 결합하여 제정된 오염물의 배출기준과 허용농도이다. 통제범위의 상이에 근거하여 오염물질배출기준은 국가오염물질배출기준과 지방오염물질배출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오염물질 배출기준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국가환경질량표준의 요구와 기술경제 조건의 요구에 근거하여 제정된 전국범위내에서 적용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이다. 지방오염물질 배출기준은 국가오염물질배출기준중 미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제정된 지방오염물질 배출기준을 포함하며, 국가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집행이 환경질량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구역에 대하여 제정한 국가오염물질 배출기준 보다 더 엄격한 지방오염물질 배출기준을 포함한다. 국가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지방오염물질 배출기관의 관계는 지방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반포된 구역에서 이러한 구역

에서 배출된 오염물에 대해서는 응당 지방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집행된다. 지방오염물질 배출기준 중 아직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여전히 국가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집행된다.

(4)환경관측

환경측은 간혹 또는 연속적으로 환경중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그 변화와 환경영향에 대한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관측의 목적은 환경중 이미 알려진 유해오염물질의 변화 추세를 관측하여 통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며, 환경중 주의를 요하는 오염물질을 연구하고 감정하며, 사고성오염물질에 대하여 시험 측정을 실시하여 곧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관측제도를 수립하고 관측규범을 제정하며 유관부문과 관측망을 조직하여 환경관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응당 정기적으로 환경상황공보를 발표한다.

나. 오염방지 감독 관리제도

중국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오염방지 감독 관리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 3同時制度, 오염배출신고 등록제도, 배출부과금제도, 현장검사제도, 期限處理制度, 오염사고보고 및 처리

중국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오염방지 감독 관리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 3동시제도, 오염배출신고 등록제도, 배출부과금제도, 현장검사제도, 기한처리제도, 오염사고보고 및 처리제도 등이 있는 바, 이중 3동시제도는 중국이 환경오염방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독특하게 창안한 제도의 하나로서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상호결합하여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제도로 중국 환경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도 등이 있는 바, 이중 3동시제도는 중국이 환경오염방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독특하게 창안한 제도의 하나로서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상호결합하여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제도로 중국 환경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건설사업(“建設項目”이라 칭함 : 필자주)을 착공하기 전에 그 항목의 부지 선정, 설계와 완성 · 생산투입사용후 주위환경에 초래할 불량한 영향에 대하여 조사, 예측과 평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방지조치를 취하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에 비준을 의뢰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보고서 혹은 환경영향평가보고표는 바로 환경영향평가의 문자표현형식이다.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기타 기본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

징 이외에 그 자체로서 일련의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 첫째는 “예방”을 법률의 강제작용으로 보장하는 정책의 집행이며 “3동시”제도와 연결하여 같이 신오염통제의 주요제도로 성립되었다. 둘째는 기본건설절차에 편입되어 환경관리와 계획관리로 하여금 경제관리와 건설관리를 긴밀하게 결합시켜서 건설절차상에서 환경영제의 협조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는 건설단위, 평가단위, 주관부문과 환경감독부문 등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집행시 주체의 직책권한이 비교적 명확하여 조작성이 강하다. 네번째는 구별하여 대응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이 보다 큰 건설항목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건설항목에 대하여는 환경영향보고표만을 기록하면 된다. 다섯째는 공정의 실용성이 높고 부지의 우선배치, 공정설계, 방지조치, 생산관리와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적합한지도와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공한다. 기본규정으로는 “建設項目環境影響評價辦法”이 있다.

(2)“3同詩” 제도

“3同詩” 제도는 新建, 改建, 增建의 기본건설항목, 기술개조항목, 구역개발항목 혹은 자연자원개발항목의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 시설은 반드시 주체공정과 同時設計, 同時施工, 同時生產에 投入 혹은 同時使用

해야 한다는 제도를 줄여서 “3同詩” 제도라고 한다.

“3同詩” 제도는 중국의 환경보호법의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며 중국이 제일먼저 만든 제도이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이 밀접한 연관을 맺어 “예방위주”방침, 신오염생성통제의 아주 유효한 법률제도이다. 이것은 “예방위주”정책의 구체화, 제도화와 규범화이다.

“3同詩” 제도가 본래 구비하고 있는 주요한 특징은 첫째, 비교적 강한 법률상의 강제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모든 적용대상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위반한다면 이미 환경에 대하여 조성한 오염파괴의 손해 결과 여부를 물문하고 모두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둘째는 환경관리는 기본건설설계, 시공과 준공검사의 3개 절차와 긴밀히 결합하여 그 3개 절차에 대하여 시간적 요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는 기술진보의 촉진, 기술기점의 제고, 청정기술의 채택, 자원의 종합이용을 촉진하며, 공정건설이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관리 조치이다.

(3) 오염배출신고 등록제도

오염물을 배출하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서 소재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오염물배출시설, 처리시설과 현재 작업조건하에 있는 배출오염

물의 종류, 수량과 농도 등을 신고 등록하여야 하며 아울러 오염방지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배출오염물질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시 즉시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특징은 첫째, 기초성이다. 기초성은 환경관리를 위하여 오염원의 기본 상황의 일개 중요한 내력과 관리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간성이다. 신구 오염 배출단위의 오염배출, 영업정지, 오염배출의 중대한 변경과 오염물 처리시설의 철거 혹은 폐쇄는 응당 신고 등록시간과 처리 수속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오염배출단위는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동태 변화 기록상황을 나타내야 한다. 셋째는 진실성이다. 오염배출단위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나 신고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신고가 진실하지 않거나 환경관리상의 판단착오를 불러 일으킬 경우에는 이 제도의 의의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넷째는 강제성이다. 법률의 규정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관련 오염물 배출신고사항의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고하거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배출부과금제도는 환경중 배출되는 오염물질 혹은 규정을 초과하는 표준오염물질의 배출자에게 국가의 법률과 법규의 규정 및 오염물질 배

출표준에 의하여 일정액의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며 이를 오염방지 를 위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배출부과금 정수의 목적은 기업사업단위로 하여금 경영관리를 강화하게 하고 자원의 절약과 종합이용, 오염의 처리, 환경의 개선을 강화하고 촉진한다. 그것은 “오염자부담원칙”과 “오염자가 오염을 처리한다”는 정책원칙 및 환경가치와 환경경제이론을 실현하는 제도이며 아울러 중국의 실제상황을 구체화시킨 독특한 특색을 구비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이다. 그 자체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 강제징수이다. 오염배출단위는 반드시 규정된 기한에 따라서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여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날짜에 따라서 체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환경보호 부문은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 둘째는 부과금의 납부로 오염처리 책임, 손해배상 책임, 기타 법정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오염이 중하면 처벌도 엄중하다는 것이다. 1979년 9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시행)이 공포된 후에 새로 건설되는 항목의 오염배출표준을 초과, 오염처리시설의 임의 철거 혹은 오염처리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운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오염물질 배출표준을 초과하여 심한 오염으로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처리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기업사업단위에 대하여는 부과금을 가산하며 부과금 납부후에도 여전히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단위에 대하여는 징수를 시작한지 3년되는 때부터 시작하여 매년 일정의 부과금을 높여서 징수한다. 넷째는 우대조치와 징벌의 결합이다. 부과금은 생산원가에 포함시키고, 주요 보조증점오염배출단위의 오염처리 장려우대정책에 속하나 체납금, 표준배출부과금의 제고, 부과금과 별금의 가산 등을 생산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못하며 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는 기금은 유상으로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된다. 정수된 부과금은 예산에 편성되고 특별자금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되어 중점오염처리 및 종합성환경오염처리조치의 보조에 주로 사용하며, 부과금으로 적립된 오염원처리특별기금은 유상으로 사용된다.

(5)기한처리제도

환경에 극심한 오염을 야기한 기업, 사업단위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처리를 시키는 제도이다. 중앙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는 직접관할하는 기업사업단위의 기한처리를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에 의하여 결정한다. 시, 현 혹은 시, 현 이하 인민정부관할의 기업, 사업단위의 기한처리는 시, 현인민정부에 의하여 결정한다. 기한처리 명령을 받은 기업사업단위는 반드시 기한안에

처리임무를 완성하여야 한다. 기한처리 기한을 경과하거나 기한을 넘겨서도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기업, 사업단위는 야기된 위해의 결과에 근거하여 행정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오염사고 보고 및 처리제도

오염사고 보고 및 처리제도는 사고 혹은 기타 돌연성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환경에 심한 오염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유관 상황을 통보하고 보고 힘과 아울러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사고와 환경긴급상황의 보고 및 처리제도라고 부른다.

오염사고는 환경보호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제, 사회활동과 행위 그리고 의외의 요인의 영향 혹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환경이 오염을 받고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받으며 사회경제와 국민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며 사회에 좋지 않는 영향을 조성하는 돌출성 사건이다. 이를 분류하면 수질오염사고, 대기오염사고, 소음진동오염사고, 고체폐기물오염사고, 농약과 유해화학물질오염사고, 방사성오염사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긴급상황은 환경중의 오염물질의 확산, 희석, 강해(유기화합물 분자중 탄소원자수가 감소하여 분자량

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함 : 편자주), 정화에 불리한 기상, 수문 혹은 기타 자연현상의 출현에 의하여 환경중에 들어와서 쌓인 오염물이 대량으로 모이게 되면 사람의 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입하게 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대하여 심한 오염으로 위협적인 상황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아주 큰 오염과 공해사건이 발생하기 쉽다.

처리는 상술한 상황이 출현할 때 반영하고 취하는 보고, 통제, 방어, 소산, 자구, 조사, 조치 등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이제도 자체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 예방성이다. 사고 발생 전에 모든 힘을 다하여 발견해야 하며 즉시 판단하여 방비 조치를 취하여 손실의 야기를 막아야 한다. 둘째, 시간성이다. 사고 발생후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구와 법정시간내에 즉시 유관방면에 상황을 통보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즉시 혹은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해를 제거 혹은 경감시켜야 한다. 셋째, 책임성이다. 사고를 일으킨 단위, 환경보호부문 혹은 기타 유관부문, 인민정부는 모두 명확한 책임과 마땅히 이행해야 할 직책의무를 규정하였다. 직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모두 반드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넷째, 목적성이다. 이제도가 도달해야 할 직접 목적은 바로 손실의 감소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